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신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44
----------	-------

발의연월일 : 2023. 2. 21.

발의자 : 신원식 · 백종현 · ~~황보승희~~

조수진 · 윤두현 · 윤주경

최재형 · 홍석준 · 전주혜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방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인가·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를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인가·승인·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인가·승인·협의 등 의제

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4조(「군용전기통신법」의 개정) 군용전기통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보상금액의 결정 통지)”를 “(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5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를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허가·인가·승인·협의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가·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인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인가·허가 등의 의제)</p> <p>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1. ~ 9. (생략)</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인가·허가 등의 의제)</p> <p>① ----- -----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인가·승인·협의 ---.</p> <p>1. ~ 9.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인가·승인·협의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p>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u>이의신청</u>) ① · ② (생 략)</p> <p><u>③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u></p> <p><u>④ (생 략)</u></p> <p><u><신 설></u></p>	<p>제21조(<u>이의신청 특례</u>)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③ (현행 제4항과 같음)</u></p> <p><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u></p>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생략)</p> <p><u><신설></u></p> <p>제14조(이의신청)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 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 결 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 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p> <p><u><삭제></u></p>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인 · 허가 등의 의제 등)
①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 인가 · 승인 ·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9. (생략)

② 평택시장이 제17조의 규정

-----.
<후단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 ·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인 · 허가 등의 의제 등)
①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 · 인가 · 승인 · 협의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 인가 · 승인 ·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9. (현행과 같음)

② ----- 제17조에 따라

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16조제1
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
어서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허가 · 인가 · 승인 · 협의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